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1
가. 세 입	1
나. 세 출	2
(1) 총 괄	2
(2) 이 · 전용	3
(3) 이 월	3
(4) 불 용	4
 2. 예비비 지출	 4
 3. 재무결산	 4
가. 재정상태 분석	4
나. 재정운영 분석	7
다. 순자산변동 분석	9

Ⅱ.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11
가. 개 요	11
나. 원활한 진실규명조사 추진을 위한 인적 구성 완비 필요	14
2. 진화위운영(1031-300)	19
가. 개 요	19
나. 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1
다. 제2기 위원회 종료와 제3기 위원회 출범 간 원상복구 비용 지출 문제 ..	24
3. 진화위인건비(7002-250)	29
가. 개 요	29
나.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30
4. 진화위기본경비(7002-250)	33
가. 개 요	33
나. 포상금 예산 집행 비목의 부적절성	34

I.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1억 1,100만원¹⁾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함.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	110	110	-	-	100.0
합 계	-	110	110	-	-	100.0

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 109,900,350원

나. 세 출

(1) 총 괄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음. 세출예산액은 167억 6,300만원이었고, 예산액 대비 90.9%인 15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미집행 예산 18억 3,0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이체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A/C (%)	B/C (%)
본예산	추경 (A)										
16,763	16,763	-	309	△1,830	-	15,242	15,242	-	-	90.9	100.0

동 세출예산은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과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운영 단위사업(진화위운영 세부사업 1개)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 및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5회계연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6,763	16,763	309	△1,830	15,242	15,242	90.9	-
1000 진실화해위원회 운 영 계	3,266	3,266	309	△1,089	2,486	2,486	76.1	-
1031 진 화위운영	3,266	3,266	309	△1,089	2,486	2,486	76.1	-
진 화위운영 (1031-300)	3,266	3,266	309	△1,089	2,486	2,486	76.1	-
7000 진실화해위원회 행 정 지 원 계	13,497	13,497	-	△741	13,341	12,756	94,5	-
7001 진 화위인건비	6,811	6,811	-	△77	6,734	6,734	98.8	-
진 화위인건비 (7001-150)	6,811	6,811	-	△77	6,734	6,734	98.8	-
7002 진 화위기본경비	6,686	6,686	-	△664	6,022	6,022	90.0	-
진 화위기본경비 (7002-250)	6,686	6,686	-	△664	6,022	6,022	90.0	-

(2) 이·전용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미집행 예산 18억 3,0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함.

(3) 이 월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이월은 해당 없음.

(4) 불 용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른 미집행 예산 이체로 불용은 해당 없음.

2. 예비비 지출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

3. 재무결산

진실화해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2025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청산을 완료하였으므로 2025년의 재정상태표는 청산 완료 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2025회계연도 말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0원이 됨.

2025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자산은 0원으로 전년도 33억 9,600만원 전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금융자산이 16억 6,700만원, 유무형자산이 11억 3,900만원 및 기타 자산이 5억 9,000만원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5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채는 0원으로 전년도 5억 4,200만원 전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충당부채 감소에 기인함.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0원으로 전기 대비 28억 5,400만원 감소함.

[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율(%)
자산합계(a)	-	3,396	-3,396	-100.0
I. 금융자산	-	1,667	-1,667	-100.0
II. 유·무형자산	-	1,139	-1,139	-100.0
III. 기타자산	-	590	-590	-100.0
부채합계(b)	-	542	-542	-100.0
I. 차입부채	-	-	-	-
II. 충당부채	-	542	-542	-100.0
III. 기타부채	-	-	-	-
순자산(a-b)	-	2,854	-2,854	-100.0

※ 2025(A) : 2025년 12월 31일자 잔액, 2024(B)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부채 종류에 대한 설명]

구분	설 명
금융자산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 등)
유·무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 및 비품 등)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등)
기타자산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충당부채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

나. 재정운영 분석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운영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재정운영 결과	

2025년도 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33억 5,500만원에 관리운영비 138억 4,9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9,200만원을 차감한 171억 1,300만원임.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순원가는 일반연구용역비 및 국고보조사업비 등 감소로 전년 대비 13억 1,100만원 감소하였고,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및 기타경비가 각각 3억 6,900만원, 3억 9,100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7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은 지출금반납금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소함.

[2025년도 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3,355	4,666	-1,311	-28.1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55	4,666	-1,311	-28.1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3,849	14,609	-760	-5.2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92	162	-70	-43.2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7,113	19,113	-2,000	-10.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7,113	19,113	-2,000	-10.5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위원회의 순자산은 0원으로 2025년 말 기준 청산이 완료되어, 전년도 말 순자산 대비 28억 5,400만원이 순감하였음.

구체적으로 기초순자산 28억 5,400만원에서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142억 5,900만원 발생하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171억 1,300만원 발생하여 기말순자산은 0원이 됨.

[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2025(A)	2024(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2,854	4,182	-1,328	-31.8
II. 재정운영결과	17,113	19,113	-2,000	-10.5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4,259	17,785	-3,526	-19.8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	2,854	-2,854	-100.0

※ 2025(A)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B)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Ⅱ.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출범하였으나 위원회 구성 지연 및 직원 임용 미완료 등으로 인해 신규 진실규명 접수사건의 본격적인 조사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직원 임용 등을 마무리 하여 진실규명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법률 제17392호, 2020.6.9.)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을 종료하였음.
-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2025.5.26.)로 인한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하고, 집단수용시설, 해외입양아동 인권침해 등 진실 규명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제기되었음.
-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26년 1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6년 2월 26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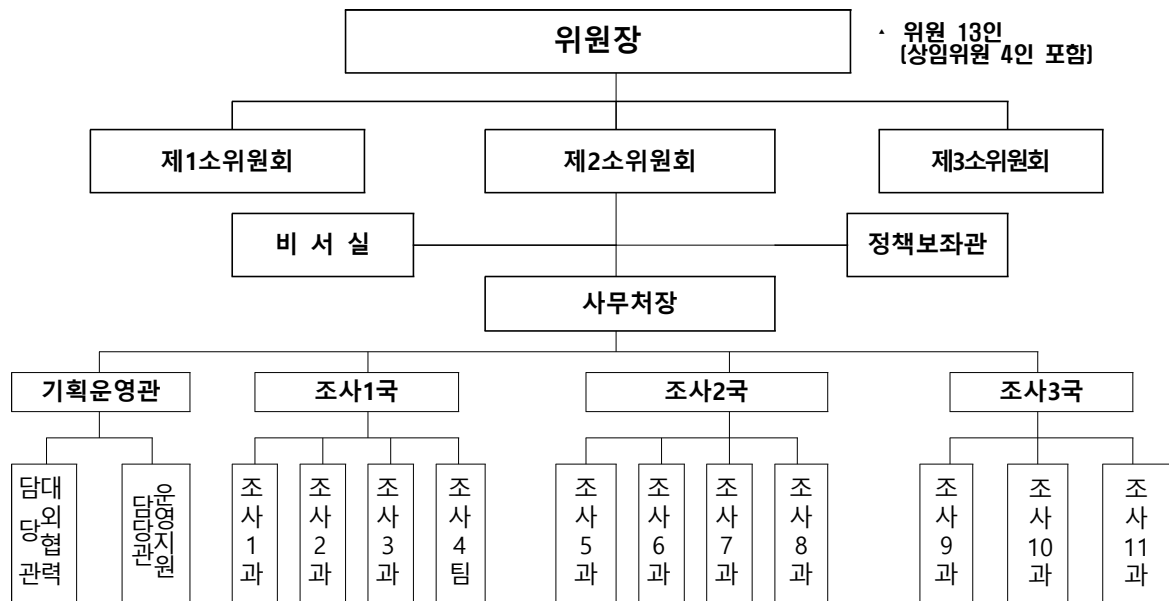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의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의 수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여 소위원회 확대운영 등 보다 세분화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등 조사대상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시기(2001년)까지로 확대하고,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사건 관련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하는 한편,²⁾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과거사 진실규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 하였음.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직 현황]



나. 원활한 진실규명조사 추진을 위한 인적 구성 완비 필요

- 2026년 2월 26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진실규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1개월 간 총 2,057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동기(740건) 대비 2.8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진실규명신청 접수현황(2026.3.25.기준)]

사건 유형별	3기 접수 현황 (2026.2.26.~3.25.)		2기 접수 현황 (2020.12.10.~2021.1.9.)	
	건	명	건	명
계	2,057	2,057	740	1,305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423	423	552	651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341	341	50	234
해외입양	316	316		
집단시설	893	893	26	298
기타(항일,적대세력,확정판결, 3.15의거,기타)	84	84	112	122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자료,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1개월, 진실규명 신청 크게 늘어”를 토대로 재가공

-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히 높으며,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진실규명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화해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이 시점까지 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 1명만 임명된 상태로, 이후 4월 17일에 대통령 지명 몫인 2명의 위원이 추가로 지명되었고, 6월 24일에 이르러서야 국회 추천 몫 10명의 임명이 이루어졌음.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임명 현황]

(2026.7.기준)

구분	지명/선출방식	성명	주요경력	임명일
위원장	대통령 지명	송상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2026.3.4.
상임위원	대통령 지명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2026.4.17.
상임위원	여당 추천	이호중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6.24.
상임위원	야당 추천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6.24.
위원	대통령 지명	박구병	아주대학교 다산학부 학장	2026.4.17.
위원	국회의장 추천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	2026.6.24.
위원	여당 추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연대 활동가	2026.6.24.
위원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2026.6.24.
위원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2026.6.24.
위원	야당 추천	이동욱	KBS 한국방송공사 이사	2026.6.24.
위원		김웅기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변호사	2026.6.24.
위원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2026.6.24.
위원	비교섭 추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2026.6.24.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위원 선임 및 직원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국회 추천 몫의 위원들에 대한 선출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치며 선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실제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5일 공포되었는바, 법률 공포 이후 출범까지의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해 위원 선임, 직원 임명 등의 준비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2026년 7월 3일 제1차 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1·2·3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고, 이후 7월 7일 업무범위 확장에 따른 직원 증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진실 화해위원회 사무처 정원을 기존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제3기 위원회의 첫 사건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음.

□ 조사개시결정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6년 7월 21일부터 2029년 7월 20일까지 3년간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후 조사기간을 각각 1년씩 2회 연장하여 최대 2031년 7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³⁾

3) 「과거사정리법」 제3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다만, 이번 조사개시결정 대상사건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이며, 제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신규 접수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제2·3기 진실화해위원회 최초 조사개시 현황]

구분	위원회 출범	최초 조사개시 결정	조사개시결정 내용
제2기	2020.12.10.	2021.5.27.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의결
제3기	2026.2.26.	2026.7.21.	제2기 위원회 활동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 2,111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의결

※ 2026.7.15.기준으로 제3기 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은 총 6,347건임.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 또한 직원 임용 등에 관하여도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총 정원 257명 중 173명만 충원되어, 현재까지도 조사인력 충원 등을 위한 채용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직원 현황]

(2026.7월 말 기준, 단위: 명)

계 (총원/현원)	정원 내 (165/123)			정원 외 (92/50)		
	정무직	별정직	국가직	지방직	전문임기	사무보조
257/173	4/4	100/69	61/50	42/7	26/21	24/22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진실화해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제3기 위원회 출범 후 짧은 기간 내 다수의 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된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속한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구성을 완비하여 활동기간 내 충분한 진실규명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진화위운영(1031-300)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이 2025년 5월 26일 종료되어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소요가 감소하였으나,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감액되지 않아 75% 이상이 미집행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 소요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해 원상복구비 지출이 필요해졌으나, 해당 금액을 공사계약이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고, 임대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상복구가 아닌 제3기 위원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본래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운영’ 사업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조사 등 진실규명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의 명예회복 및 K-진실화해 모델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 회계연도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당초예산현액 36억 6,500만원 중 24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미집행 금액 10억 8,9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 이체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운영	3,266	3,266	309	△1,089	-	2,486	2,486	-	-	-
위원회대외홍보	234	234	6	△47	-	200	200	-	-	-
진실규명 조사	1,975	1,975	303	△739	-	1,539	1,539	-	-	-
위원회 정리	1,057	1,057	-	△310	-	747	747	-	-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실규명 조사’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증인·참고인 면담, 현장 및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진실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임.
- 이중 집단희생 사건 등 현지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220-01목) 예산은 2024년의 6억 3,500만원 대비 1억 3,100만원 감액된 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이 2025년 5월 26일까지만 진행되고,⁴⁾ 이후에는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소요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내여비 편성예산 5억 400만원의 24.8%인 1억 2,500만원만 집행되고, 3억 7,900만원의 예산이 미집행 후 이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최초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진행하였고, 2025년 5월 26일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5년도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 내 국내여비(210-01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국내여비(210-01)	504	0	△379	125	125	0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5년도 월별 기준으로 볼 때, 조사활동 종료시점(2025년 5월 26일) 이전인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1,780만원의 국내여비가 집행되었으나, 6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600만원으로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2025년 동 세부사업 내 월별 국내여비(220-01)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국내여비(220-01)	5	24	30	20	10	15	7	4	4	1	5	125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와 같이 제2기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이후 국내여비 소요가 크게 감소하였는바, 2025년도 예산 소요액 산정과정에서 이를 감안한 예산감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나, 예산 산정 과정에서 이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시적인 기간 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특성상 활동 종료가 예정된 해의 예산은 보다 면밀한 추계를 통해 편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시 미집행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⁵⁾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해 소요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여 적정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해의 예산은 더욱 신중히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다만, 제2기 위원회의 경우 조사활동 종료 시점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수가 많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수 상정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5년 5월 26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필요는 있음.

다. 제2기 위원회 종료와 제3기 위원회 출범 간 원상복구 비용 지출 문제

□ 2025년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2026년 2월 26일 출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었고, 해당 법률안은 2025년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2025년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통과 후 2026년 2월 5일 공포되었음.

□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점보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시점이 먼저 도래하였고, 사무공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건물의 원상복구가 필요해졌음.

[본래 계약서 상 원상복구 관련 내용]

제25조 【원상복구 및 명도】

- ①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소유재산을 반출하고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은 최근의 기준층(표준층) 준공도면을 기준 (임대인이 추가비용 없이 임대 가능한 수준)으로 상이한 모든 내부설비, 칸막이, 내외장 및 기타 구조상의 변조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공사를 마친 후 임대인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복구공사 확인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 유익비 기타 임대차목적물의 수선, 개조, 설비의 추가나 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원상복구 및 임차인 소유 재산의 반출을 완료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 및 임차인 소유 재산의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 과정에서 사무공간 원상복구를 위한 견적서를 3개 공사업체로부터 받아본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따르더라도 편성된 공사비(420-03목) 예산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설계비(420-02목)에서 3,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충당하였음.

[2025년도 원상복구 관련 공사비(420-03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공사비(420-03)	358	0	35	393	393	0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면제받았음.

[임대차계약 종료합의서(2025.11.25.)의 관련 내용]

제3조 [합의 사항]

-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4조제1항의 정산금을 지급하면, 본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제4조 [임대차계약 정산]

- ① 임차인은 본 합의서 제3조제1항에 의거, 아래 표의 정산금액을 2025년 11월 26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을 완료한다.

항 목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비 고
정산금	393,000,000	없음	393,000,000	원상복구비용 상당액

(단위: 원)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의 활동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사계약 체결 시 그 집행의 검수 및 대금지급 등을 담당할 주체가 부재하게 되므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등 타 국가기관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금액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과거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할 때 이와 유사하게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것으로, 본래의 사무실 위치에서 재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아니함.⁶⁾

□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3기 위원회 출범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점이 문제일 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이 이루어질 것은 확정된 상황에서, 출범 이후 위원회가 현재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을 가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지급받은 비용을 투입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집행할 유인은 더욱 작아지게 됨.

6) 또한 공사계약 검수 및 대금지급 주체가 부재하게 된다는 설명에 대하여는,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잔여 예산이 행정안전부로 이체되었으므로, 해당 업무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이어받아 담당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이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원상복구가 아닌 제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예비비 편성 이전 사흘
(2026.2.26.~2.28.)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음.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료 내역]

항목		금액(원)	비고
정산금	기 납입 정산금	393,000,000	25.11.26. 납부완료
TI	6F 임대료	15,679,536	2.26.~2.28.(3일치), vat포함, 산정기준 : 2.26.체결된 변경계약서상 임관리비
	6F 관리비	6,935,616	2.26~2.28(3일치), vat포함, 산정기준 : 2.26.체결된 변경계약서상 임관리비
	6F 임관리비 합계	22,615,152	
	공사 지원	370,384,848	진화위 공사견적서 별도 첨부

見 積 書

제 출 처 : 남산스퀘어

제 출 일 : 2026년 2월 일

아래와 같이 見積書を 제출합니다.

공 사 명 : 화해진실위원회 사무실환경조성 공사

공사금액 : 一金參億伍仟萬圓整(₩350,000,000)

대일내장건설주식회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증안로 39,403호

대 표 정 문 화

대표전화 (02) 2273 - 3466

팩 스 (02) 2268 - 1312

Mobile 010 - 9181 - 3466

내 용	단위	수량	금 액	비 고
수장공사(5층, 6층)			79,729,000	
사무실 집기 재배치			62,586,000	
전기공사			34,891,000	
정보통신공사			91,976,000	
AV시스템공사			58,191,000	
전산기기설치작업			22,643,000	
(총 계)			-16,000	
			350,000,000	

1.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보임.

□ 첫째, 원상복구 비용 산정의 엄밀성 문제임.

진실화해위원회는 업체 3곳에서 견적서를 받아 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비용 산정 방식은 경쟁입찰 등을 통한 업체 계약 방식과 비교할 때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실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된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검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임.

해당 예산은 당초 사무실 퇴거 시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편성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인테리어 및 임대료·관리비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는바, 국회 심사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승인되지 않은 항목에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음.⁷⁾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 종료 시 원상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집행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음을 유념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진화위인건비(7001-150)

○ 제2기 위원회의 활동이 2025년 11월 26일 종료되어 직원들이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12개월분으로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 점을 볼 때, 적정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적정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인건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 당초예산현액 68억 1,100만원 중 67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2025.11.26.)에 따라 미집행 금액 7,7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 이체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인건비	6,811	6,811	-	△77	-	6,734	6,734	-	-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필요

-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110-01목)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⁸⁾
- 2025년도 인건비 예산의 경우 동년 11월 26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종료가 예상된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11개월분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⁹⁾ 실제 인건비 예산은 12개월분으로 편성되었음.
- 그런데, 인건비 예산 집행 결과 편성예산액 68억 1,100만원 중 67억 3,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8%로 나타남.
- 1개월 당 인건비 소요액이 적정하게 추산되었음을 가정하는 경우, 12개월분으로 편성된 예산을 11개월분만 집행하였으므로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집행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12개월분으로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만약 직원들이 12개월을 근무했다고 가정할 경우 예산부족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임.

8)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43~44.

9)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24.11., pp.8~14.

-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 인건비 예산에서 매년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부족분을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음.

[2022~2024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인건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2	5,257	49	433	5,733	5,716	17
2023	6,094	0	480	6,574	6,537	37
2024	6,520	0	371	6,891	6,883	8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와 같은 인건비 부족은 주로 공무원 보수(110-01목)에서 발생하였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가 집행한 금액이 편성예산보다 더 큰 상황이 4년간 지속되고 있음.

[2022~2025년도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110-01목)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금액
공무원 보수 (110-01목)	2022년	4,311	4,777	4,777
	2023년	4,647	4,972	4,964
	2024년	4,797	5,184	5,184
	2025년	4,937	5,067	5,067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시적 조직으로의 특성상 경력 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는바, 이들 인력의 채용 후 호봉 산정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큰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어 보수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2025년의 경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2025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연내 지급하여야 했으나, 이를 2025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집행액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조사기간 등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부족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인건비를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진화위기본경비(7002-250)

- 우수직원 등에 대한 포상금을 기타운영비, 포상금 등 서로 다른 두 비목에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므로, 향후 포상금 등은 포상금 비목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기본경비’는 회의 개최, 정기 조사보고서 발간, 조사업무 수행 지원, 사무보조인력 운영, 기록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 당초예산현액 66억 8,600만원 중 6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2025.11.26.)에 따라 미집행 금액 6억 6,400만원을 행정안전부에 이체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기본경비	6,686	6,686	-	△664	-	6,022	6,022	-	-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포상금 예산 집행 비목의 부적절성

- 2025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무처 운영지원’에는 과운영비, 격려금 등을 위한 기타운영비(210-16목) 4,543만원과,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310-03목)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타운영비·포상금 목의 예산 편성 근거]

세사업 명	편성 근거
사무처 운영지원	○ 기타운영비(210-16) : 45,430천 원 가. 위원장 등 비서실 운영비 : 300천 원×4개실×11월=13,200천 원 나. 과운영비 : 2,430천 원×11월=26,730천 원 다. 격려금 및 축의금 : 500천 원×11월=5,500천 원 ○ 포상금(310-03) : 9,000천 원 가. 우수직원 포상 : 450천 원×5명×4분기=9,000천 원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그 편성목적에 따라 기타운영비 비목에서는 월간 과운영비, 직원 결혼 축의금, 부의금 등이, 포상금 비목에서는 분기별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어 왔음.
- 그런데, 2025년의 경우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1·2분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11월에는 포상금 비목에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우수직원 등 유공자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서로 다른 두 비목에서 포상금 집행이 이루어졌음.

[2024~2025년도 기타운영비·포상금 목의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원)

연도	구분	집행일	집행액	집행내역
2024	포상금 (310-03목)	2024-03-26	1,900,000	2024년 1분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등 포상금
		2024-06-28	1,900,000	2024년 2분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등 포상금
		2024-10-28	1,900,000	2024년 3분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등 포상금
		2024-12-24	1,900,000	2024년 4분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등 포상금
	소계		7,600,000	
2025	기타운영비 (210-16목)	2025-03-25	1,900,000	2025년 1분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등 포상금
		2025-07-09	1,900,000	2025년 2분기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등 포상금
	소계		3,800,000	
	포상금 (310-03목)	2025-11-03	4,800,000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우수직원 등 유공자 포상금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집행지침 등을 참고할 때 기타운영비에서도 우수부서·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이는 일정한 포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례와 같은 우수직원 포상금은 포상금 비목(310-03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¹⁰⁾

10) 또한 포상금을 서로 다른 비목에서 집행할 경우 전체 집행 규모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예산편성내역과 다른 목적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정 목적을 위한 지출은 하나의 비목에서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집행지침 상 기타운영비·포상금 세목(내역)]

세목(내역)
210-16 기타운영비 1. 기업특별회계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2.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3. 시험위원 수당, 시험종사자 수당 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시험관리비 4.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310-03 포상금 1.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2. 예산절약 상여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71., p.275.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또한 포상금 비목에 편성된 900만원 중 480만원만 집행하고 420만원은 미집행 후 이체한 반면,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포상금 비목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를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기타운영비 비목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임.

[2025년도 기타운영비·포상금 목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기타운영비(210-16)	45	0	△1	44	44	0
포상금(310-03)	9	0	△4	5	5	0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포상금 등을 포상금 비목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